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4.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4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적과장 윤재한

#### **가.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 10명 이내 구성
-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2)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위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정

-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
-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등
-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3)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관련 업체 임직원은 제척
-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피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 가능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 해촉사유 규정

(4) 각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

(5)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6조)

-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결정(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 거부 가능

(6)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안 제18조)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14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11조에서 각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